

	<h2 style="margin: 0;">교수업적평가규정</h2>	규정번호	3-2-08
		제정일자	2006. 1. 1.
		개정일자	2026. 3.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민대학교(이하 “본 대학” 이라 한다.) 교수업적 평가를 위한 평가 영역, 평가 기준 및 절차, 평가 결과의 활용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

제2조(적용 범위 및 대상) ① 본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정년트랙 및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업적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은 해당 연도 업적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07월 01일 이후 신규 임용된 교원
2. 정년퇴직까지 1년 이하의 기간이 남은 교원
3. 휴직, 연구 년(연구 학기), 산업체 연수, 파견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 평가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교원
4. 기타 총장이 허가하는 직무에 속하는 교원

③ 제2항 제3호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평가 해당 연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교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학기별 평가 항목(강의평가 등)이 1개 학기 업적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적에 2배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2. 2학기 재임용자의 경우 연 단위 업적평가에 필요한 1, 2학기의 업적이 없을 시 재임용 기간 중 선행 학기들의 업적에 대하여 평균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업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한 업적으로 평가한다.

[전문개정 2019.1.1.]

제3조(평가 원칙)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평가 기준을 세분화하여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4조(평가 영역 및 평가 기간) 교육 영역, 산학협력 영역, 연구 영역, 입시홍보 영역, 공과 영역은 매년 1년 단위(1.1~12.31)로 평가하며 평가 시기는 평가 연도 익년도 1월 중에 시행한다. 다만, 승진·재임용의 경우 소정 기간의 업적에 대하여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9.1.1.)

제5조(평가 결과의 적용) ① 교원 승진·재임용·정년보장 심사평정에 적용한다.

② 우수 교원 선정 및 성과금 산정 등에 적용한다. 다만, 외국인 채용 전형으로 임용된 교원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1.1.)

제6조(비밀유지) ① 교수업적평가와 관련된 업적보고서, 평가보고서, 재심사자료 및 심사평가 결과는 관련 부서 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평가영역 및 기준

제7조(평가영역 및 정의) ① 평가영역은 교육성과 및 봉사 영역, 산학협력 영역, 연구 영역, 입시홍보 영역, 공과 영역으로 구분하고, 평가는 각 영역별로 계량화하여 산정하되, 종합평가의 총점은 영역별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09.01., 개정 2025.04.01)

② 각 평가영역별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교육 업적평가 : 강의, 수업참여도, 봉사 등 제반 교육활동 (개정 2022.09.01., 개정 2025.04.01)
2. 산학협력 업적평가 : 전공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산학협력 활동 (개정 2022.09.01)
3. 연구 업적평가 :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진행하는 연구 활동 (개정 2022.09.01)
4. 입시홍보 업적평가 : 입시홍보 등 일체의 활동 (개정 2022.09.01)
5. 공과 업적평가 : 상훈, 징계 등 일체의 활동 (개정 2022.09.01)

제8조(교육 업적평가) 교육 업적평가는 [별표 2]의 교육 영역 평가 기준에 의하여 교수학습,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도, 정원 내 재학생 관리, 강의평가, 봉사에 대한 평가를 한다. (개정 2025.04.01.)

[제목 개정 2025.04.01.]

제9조(산학협력 업적평가) 산학협력 업적평가는 [별표 3]의 산학협력 업적평가 기준에 의하여 취업률, 산학협력 활동, 현장실습, 산학교육 활동, 창업 활동 지원, 산학 연구, 기술 연구, 기술 사업화 등에 대한 평가를 한다. (개정 2022.09.01., 2025.04.01)

제10조(연구 업적평가) 연구 업적평가는 [별표 4]의 연구업적 기준에 의하여 학술논문, 학술저서, 학술 회의, 창작발표·전시공연 등에 대한 평가를 한다. 단, 정년보장임용교원의 경우 매년 별도의 지침에 의한 연구력 강화에 기여하고 해당 의무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 2020.2.1. 2025.04.01)

[제목개정 2019.1.1.]

제11조(입시홍보 업적평가) 입시홍보 업적평가는 [별표 5]의 입시홍보 업적 평가 기준에 의하여 입시 및 홍보 지원 활동, 정원 모집 활동, 경쟁력 강화 활동 등에 대한 평가를 한다. (개정 2022.09.01., 2025.04.01)

제12조(공과 업적평가) 공과 업적평가는 [별표 6]의 공과 업적평가 기준에 의하여 상훈 실적, 장학금/발 전기금 유치(기탁) 실적, 보직, 평가·인증활동에 대한 가점 사항과 징계, 학사관리 미준수 등에 대한 감점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한다. (개정 2022.09.01., 2025.04.01)

제13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배점기준 및 인정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제14조(영역별 점수배점 및 총점) 영역별 점수는 교육성과 및 봉사 영역(필수영역) 24점, 산학협력 영역 40점, 연구 영역 6점, 입시홍보 영역 30점이며 총점 100점으로 산정한다. 다만 산학협력영역, 연구 영역, 입시홍보영역은 점수 초과 시 각 영역에 대하여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2.09.01., 2025.04.01., 2026.03.01)

제 3 장 평가기구 및 절차

제15조(교수업적평가위원회) ① 교원의 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교수업적평가를 공정하게 수

행하기 위하여 본 대학 내에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평가위원회는 해당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원(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교원(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대표위원 1명당 10명 이하의 예비평가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1.)
- ⑤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업적평가 관리의 기본원칙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교수업적평가보고서 기재항목에 관한 사항
 3. 교수업적평가 규정 및 시행,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수업적 평가와 관련된 건의사항

제16조(평가대상 기간) ① 승진 대상 교원(전임교원)은 현재 직명의 임용기간으로 한다.

- ② 재임용 대상 교원은 해당 임용기간으로 한다.
- ③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수기간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교수업적 평가 점수는 재임용심사 점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7조(교원업적의 제출) [별표 1]의 교수업적 평가기준과 관련된 행정부서는 평가 대상 교원(전임교원)의 교육성과 및 봉사 업적, 산학협력 업적, 연구 업적, 입시홍보 업적, 공과 업적 등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8조(업적자료 입력, 제출, 확인평가) ① 평가대상 교원은 [별표 1]에 지정한 항목별로 업적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교수업적평가 입력기간에 업적평가 전산시스템에 전산 입력 기한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미입력자는 평가 시 해당 미입력 평가영역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없다.

- ② 입력한 업적평가에 대한 전산자료는 출력하여 증빙자료와 같이 평가기간에 본인이 지참하여 제출 및 평가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출한 모든 업적평가 증빙자료는 반드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본 대학이 지정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동일한 실적을 이중 입력하여 평가받을 수 없다.
- ⑤ 업적평가와 관련하여 주관부서에서 해당 교원별 면담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03.01.)

제19조(교원별 업적평가) 위원회는 제출된 증빙자료에 대한 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업적을 평가한다.

제20조(결과확정 및 통보) ① 위원회는 교원별 업적평가 결과 점수를 합산하여 교수업적평가결과를 당해 행정부서장에게 통보한다.

- ② 당해 행정부서장은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업적평가결과를 확정한다.

제21조(이의신청 및 재심사) ① 업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원(전임교원)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출서류 미비 등 평가대상 교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은 재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 교원의 소명자료와 관련 증빙자료를 근거로 재평가하며, 그 결과를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한다.

제 4 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22조(승진) 교수업적평가의 교육 영역, 산학협력 영역, 연구 영역, 입시홍보 영역, 공과 영역을 포함한 결과를 교원의 승진심사 자료로 활용한다. 다만, 승진임용의 최소 요건은 경민학원 인사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9.01.01., 2025.04.01)

제23조(재임용 및 성과금 산정) 교수업적평가의 교육 영역, 산학협력 영역, 연구 영역, 입시홍보 영역, 공과 영역을 포함한 결과를 교원의 재임용 심사 및 성과금 산정 자료로 활용한다. 다만, 재임용의 최소 요건은 경민학원 인사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9.01.01., 2025.04.01)

제24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업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수업적평가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교수업적평가를 받는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업적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수업적평가 영역별 배점 기준 종합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항목 배점	비 고
교육성과 및 봉사 업적 (24점)	1. 교수학습	8	
	2. 교육과정운영	4	
	3. 학생지도	3	
	4. 정원 내 재학생 관리	4	
	5. 강의평가	3	
	6. 봉사	2	
산학협력 업적 (40점)	1. 취업률	15	
	2. 산학협력활동	상한없음	세부사항 참조
	3. 현장실습		
	4. 산학교육활동		
	5. 창업활동지원		
	6. 산학연구		
	7. 기술연구		
	8. 기술사업화		
연구 업적 (6점)	1. 학술논문		
	2. 학술저서		
	3. 학술회의		
	4. 창작발표 등		
입시홍보 업적 (30점)	1. 입시홍보	6	세부사항 참조
	2. 등록유도 및 정원모집 활동	6	
	3. 등록관리	6	
	4. 모집기여도	6	
	5. 학과 입시경쟁력 지수	6	
공과 업적	1. 가산점	세부사항 참조	
	2. 감점		
총 점		100점	

[별표 2] 교육 업적 평가영역별 배점 기준 종합표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 세부 항목	점 수	상한점	비 고	
교육 업적 (24점)	1. 교수학습 (상한 8점)	출강 일수	○ 주 4일 이상 출강	1	2	학기당
		강의 부담	○ 6과목 이상의 강좌	1	2	연당
			○ 4과목 이상의 강좌	1		
		수업 관리	○ 수업 및 성적 관리	2	2	세부사항 참조
		교육연수	○ 수업 컨설팅	1	2	전당
			○ 연수 및 상담 교육 참가	1		1점/3시간
		역량교육 참여	○ 역량교육과정 전담교수	1	-	세부사항 참조
			○ 멘토 교수	0.5		
			○ 산업체 직무연수	0.5		
				○ 역량교육 포트폴리오 제작	0.5	
	2. 교육과정 운영 (상한 4점)	학사학위 산업체, 외국인	○ 학사학위, 전문기술석사, 산업체 위탁반, 유학반 운영 및 유지	2	2	세부사항 참조
		혁신적인 교육방식 운영	○ 미디어 연계 방식, 학습자 협동방식, 역량 강화 방식, 학습 융합 방식, 메타 기반 프로그램 등의 운영	2	2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	○ 학습접근강화형 학사 관리시스템 운영	1	1	
	3. 학생지도 (상한 3점)	상담실적	○ 평생 지도학생 학기당 1회 이상 상담	2	3	상담결과 증빙
		활동실적	○ 전공동아리 지도	1		교수 1인당 1건
			○ 각종 시험 및 대회지도	1		세부사항 참조
			○ 독서클럽 지도	1		
			○ 의무학과 실습 지도	0.1	1	세부사항 참조
	4. 정원내 재학생 관리 (상한 4점)	재학생 충원율	○ 편제정원 충원율	1	4	학과점수
			○ 유지 충원율	1		
		중도탈락률	○ 학과 중도탈락률	2		학과점수
	5. 강의평가 (상한 3점)	강의평가	○ 개인 강의평가 점수	2	2	세부사항 참조
			○ 학과 강의평가 점수	1	1	
	6. 봉사 (상한 2점)	교내위원회	○ 교내 각종 위원회 위원	0.1	0.5	세부사항 참조
교외위원회		○ 교외 각종 위원회 위원	0.1			
지역사회 봉사		○ 지역사회봉사: VMS, 1365	2	2		

■ 교육 업적 영역의 세부사항

1. 교수학습

1) 출강 일수(개인점수)

- ① 전임교원의 주당 출강 일수는 주 4일을 원칙으로 하며 달성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주 4일 출강은 월 또는 금 포함 강의 주 4일 배정을 의미, 단 교무위원 보직교수 제외)
- ② 점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주 4일 이상 출강: 연간 2점
 - 주 3일 이하 출강: 1점

2) 강의 부담(개인점수)

- ① 연간 강의 담당 과목 수(계절학기·다학기 포함)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 ② 점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연간 6과목 이상 : 2점
 - 연간 4과목 이상: 1점
 - 교양 교과 전담교원 연 2과목 이상: 1점

3) 수업 관리(개인점수)

- ① 수업 운영 및 학사관리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학기당 각 0.2점을 부여한다.
 - 수업시간 준수
 - 휴·보강 준수
 - 강의계획서 및 평가계획서 입력·기한 준수
 - 성적 처리 및 입력 기한 준수
 - 교과목 CQI 입력 및 기한 준수

4) 교육연수(개인점수)

- ① 교육연수는 전공 직무, 교수법 향상, 교육과정 개발, 학생지도, AI·DX 역량강화 등과 관련 교육프로그램 이수 시 인정 3시간 단위로 1점씩 부여한다.
- ② 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교육부, 대학 주관 연수 및 인증평가 관련 교육 등을 인정된다. (단, 학회 단순 참석, 법정 의무교육, 강의평가 하위자 컨설팅 제외)
- ③ AI·DX 관련 자격증 취득 시 교외 각 2점, 교내 1점을 부여한다.

5) 역량교육 참여(개인점수)

- ① 다음 항목 수행 후 담당 부서에서 발급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각 점수를 부여한다.
 - 교육과정 개발 전담교수 : 1점
 - 산업체 직무연수 : 0.5점
 - 멘토 교수 : 0.5점
 - 역량교육 포트폴리오 제작 : 0.5점
 - AI·DX 적용 실적 가점 부여: 교육과정개발 : 1점,
직무연수, 교수학습지침서 개발, 콘텐츠 개발 : 0.5점

2. 교육과정 운영

1) 학사학위 / 전문기술석사 / 산업체 / 외국인 유학반 운영(학과점수)

- ① 학사학위 / 전문기술석사 / 산업체 위탁반 / 외국인 유학반은 신입생 입학에 의하여 개설할 경우 1년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 ② 학사학위 / 전문기술석사 / 산업체 위탁반 / 외국인 유학반 운영은 재학생 인원에 따라 각각 차등 점수화한다.
 - 15명 미만 (1점), 15~30명 미만 (1.5점), 30명 이상 (2점)
 - (단, 정원 외로 운영하는 경우이며 입시 미충원에 따른 유학반 운영은 제외한다)

2) 혁신적인 교육방식 운영(개인점수)

- ① 혁신적인 교육방식은 <혁신적인 SMART 교육 방법>을 기반으로 하며, 교과목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여 승인된 교과목에 한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② 인정되는 교육방식은 다음과 같다.
 - 미디어 연계 방식 : 블렌디드러닝, 플립드러닝, 소셜러닝
 - 현장 연계 방식 : 캡스톤디자인, 산업체협업교육(산업체특강), 창업학습, 사례기반학습, 현장학습(현장견학)
 - 학습자 협동방식 : 협동학습, 팀기반학습(TBL), 하브루타 학습, 토론학습
 - 역량 강화방식 : 문제 중심학습(PBL), 자기주도학습, 실천학습(액션러닝), 게임 기반 학습, 포트폴리오(학습자/교수자), Design Thinking(마인드맵)
 - 학습 융합 방식 : 팀티칭,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VR), 융합 교육
- ③ 점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상기 교육방식 적용 교과목: 건당 0.5점
 - 생성형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DX) 및 Metaverse 플랫폼 적용 교과목: 과목당 1점

3)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개인점수)

- ① 학습 접근 강화형 학사제도 운영 교과목에 대하여 담당 부서 승인 및 증빙 제출 시 교과목당 1점을 부여한다.
- ②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집중이수제
 - 모듈식 집중이수제
 - 주말수업
 - 융합전공제
 - 복수전공제
 - 부전공제

3. 학생지도

1) 상담실적(개인점수)

- ① 담당 평생지도학생(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고 학사 전산망에 상담 내용을 입력한 경우 점수를 부여한다.
- ② 상담 내용은 진로, 취업, 학업, 대학생활 지도 등 구체적으로 기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순 정보 확인, 중복 기록, 형식적 상담 기록은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점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학기당 상담 실시 및 입력 완료: 1점
 - 연간 최대: 2점
 - 학기당 평생지도학생 50명 이상 지도 시: 0.5점 가산

2) 활동실적(개인점수)

- ① 다음 각 호의 학생지도 활동에 대해 증빙서류 제출 시 점수를 부여한다.
- 전공동아리 지도 : 연 1건에 대하여 1점
 - 각종 시험 및 대회 지도 : 자격시험, 공무원 시험, 경시대회 등 학생 성과 지도
1인 * 0.1점 = 최대 1점(10명)까지 부여
 - 독서클럽 지도 : 연 1건에 대하여 0.5점
 - 의무학과 실습지도 : 1인 * 0.1점 = 최대 1점(10명)까지 부여

4. 정원 내 재학생 관리

1) 재학생 충원율(학과점수)

- ① 재학생 충원율은 편제정원 충원율과 유지 충원율로 구분하며, 1년을 기준으로 학과 점수를 반영한다.
- ② 편제정원 충원율은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된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부여한다.
- 100% 이상 (1점), 99%-98% (0.8점), 97%-95% (0.6점), 94%-90% (0.4점), 90% 미만 (0.2점)
- ③ 유지 충원율은 매년 4월 1일 대비 10월 1일 기준으로 하며, 산정된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부여한다.
- 100%-97% (1점), 96%-94% (0.8점), 93%-91% (0.6점), 90%-88% (0.4점), 88% 미만 (0.2점)

2) 중도 탈락률(학과점수)

- ① 중도 탈락률은 1년을 기준으로 점수를 반영한다.
- ② 학과별 중도 탈락률은 학과의 점수를 기준으로 하며, 산정된 점수에 따라 차등 점수화한다.
- 상위 10% (2점), 20% (1.5점), 30% (1.0점), 50% (0.5점)

5. 강의평가

1) 강의평가(학과점수)(개인점수)

- ① 개인 강의평가는 학기별 정규과정 교과목 강의평가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② 개인 강의평가 점수 환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학기별 강의평가 평균점수(5점 만점)를 1점으로 환산
 - 1학기과 2학기 점수를 합산하여 반영
 - 개인 강의평가 점수는 최대 2점까지 인정한다.
- ③ 학과 강의평가는 외래교원을 포함한 학과 전체 교원의 학기별 정규과정 교과목 강의평가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④ 학과 강의평가 점수 환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학과 강의평가 평균점수 5점 만점을 0.5점으로 환산
- 1학기과 2학기 점수를 합산하여 반영
- 학과 강의평가 점수는 최대 1점까지 인정한다.

6. 봉사활동

1) 교내위원회 활동(개인점수)

- ① 교내 각종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경우 연간 활동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 ② 교내위원회 활동 점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교내위원회 활동 1건당 : 0.1점
 - 연간 최대 : 0.5점

2) 교외위원회 활동(개인점수)

- ① 교외위원회 활동은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체, 학회 등 외부기관 위원회 및 임원 활동을 포함한다.
- ② 교외위원회 활동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위촉 공문, 재직증명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한다.
- ③ 교외위원회 활동 점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교외위원회 활동 1건당 : 0.1점
 - 연간 최대 : 0.5점

3) 지역사회봉사(개인점수)

- ①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VMS 또는 1365 자원봉사 시스템에 등록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② 점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봉사 2시간당 : 0.5점
 - 연간 최대 : 2점

[별표 3] 산학협력업적 평가영역별 배점 기준 종합표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 세부 항목	점 수	상한점	비 고	
산학 협력 업적 (40점)	1. 취업률 (상한15점)	○ 목표 취업률	5	15	학과점수	
		○ 학과 취업률	7			
		○ 유지 취업률	3			
		○ 개인 취업률	최대 15			개인점수 (최대15점)
	2. 산학협력활동	○ 산학연협력 협약 체결 실적	1-2	5	건당	
		○ 애로기술 지도	1			
		○ 지산학협업센터 관련 활동	1-3			
		○ 공용장비 관련활동	1			
		○ 가족회사 유료 멤버십 유치	1~3			
	3. 현장실습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상한없음	6	학과점수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순회지도	최대 6			세부사항 참조
		○ 기업/해외 인턴십	최대 6			
	4. 산학교육활동	○ 취업활동 지원	1-2	상한없음	건당	
		○ 현장 연계 방식 운영	2			
		○ 취업지원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지도	최대 3			
		○ 글로벌 교육활동	최대 2			
	5. 창업활동지원	○ 창업동아리	2-6	상한없음	세부사항 참조	
		○ 창업활동 지원	1-2			
		○ 창업지원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지도	최대 2			
		○ 학생창업	4			
	6. 산학연구	○ 외부 프로젝트 : 50만원당 0.5점	0.5	상한없음	세부사항 참조	
		○ 정부재정지원 사업 참여 및 기타 산학협력 연구 활동	1-5			
		○ 대학발전 프로젝트 참여	1-2			
	7. 기술연구	○ 기업 부설연구소 유치	5	상한없음	세부사항 참조	
		○ 지식재산권 등록 - 산업재산권 등록 - 저작권 등록, 문화예술분야의 창작 - 신지식 재산권 등록	5-10			
		○ 신기술(NET), 신제품(NEP)인증	5			
	8. 기술사업화	○ 기술이전, 중개, 평가	1	상한없음	세부사항 참조	
		○ 기술이전 후 사업화 성공	2			
		○ 학교기업 설립 및 유지	2~5			
		○ 교원 창업 및 유지	5			

* 산학협력 영역 40 점 초과 달성 시, 연구영역, 입시홍보영역 점수로 대체가능

■ 산학협력 업적 영역의 세부사항

1. 취업률(상한 15점)

1) 목표 취업률(학과점수)

- ① 학과별 목표 취업률은 취·창업일자리센터와 학과가 협의한 목표를 기준으로 한다.
- ② 100% 이상 달성 시 5점, 95% 이상 달성 시 4점, 90% 이상 달성 시 3점, 85% 이상 달성 시 2점, 80% 이상 달성 시 1점으로 산출한다.

2) 학과 취업률(학과점수)

- ① 교수가 소속된 학과 전체의 취업률을 말하며 최신(전년도 12/31) 대학정보공시 취업률을 기준으로 한다. 단, 재임용 대상자는 업적평가 직전 대학정보공시 취업률을 기준으로 한다.
- ② 학과 취업률은 타 대학 유사 학과(수도권 평균 우선 적용, 유사 학과가 없는 경우 전국 평균 적용) 평균 취업률을 기준으로 하며 학과별 차등 적용한다. 100% 이상 달성 시 7점, 95% 이상 달성 시 6점, 90% 이상 달성 시 5점, 85% 이상 달성 시 4점, 80% 이상 달성 시 3점, 75% 이상 달성 시 2점, 70% 이상 달성 시 1점으로 산출한다.
- ③ 전년도 학과 취업률과 비교하여 당해 연도 취업률 증가율에 따른 점수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전년도 대비 1%당 1점 가산)
- ④ 산업체 교환교수, 총장의 결재를 득한 장기 출장 등으로 전공 전체의 취업률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 전체의 취업률에 의하여 취업률을 산정한다.
- ⑤ 신규 학과 개설로 인해 전공 전체의 취업률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점을 부여한다.

3) 유지 취업률(학과점수)

- ① 유지 취업률은 최신(전년도 12/31) 대학정보공시 유지 취업률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② 학과의 유지 취업률이 타 대학 유사 학과(수도권 평균 우선 적용, 유사 학과가 없는 경우 전국 평균 적용) 평균 유지 취업률 대비 100% 이상 달성 시 3점, 95% 이상 달성 시 2.5점, 90% 이상 달성 시 2점, 85% 이상 달성 시 1.5점, 80% 이상 달성 시 1점, 75% 이상 달성 시 0.5점으로 산출한다.

4) 개인 취업률(개인점수)(상한 15 점)

- ① 평생 지도학생을 포함하여 직접적인 취업 지도에 의하여 실제로 취업이 된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취업경로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모두 제출한 경우 1인당 1점으로 산출한다.

2. 산학협력활동

1) 산학연협력 협약 체결 실적(상한 5 점)

- ① 산학연협력 협약 체결은 현장실습, 취업, 지산학협업관련 활동, 가족회사 유료 멤버십 가입, 공동장비 활용(공용장비 활용 콘텐츠 제작), 공동연구(산학 연구, 기술 연구, 기술사업화 등), 협의체 구성(학과 계 위원회 참여), 자문, 강사 위촉, 특강 등 구체적 협력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인정한다.(단순 산학연협력 체결은 불인정)

- ② 산학연 협약 신규 체결 건당 또는 유지 건당 1점을 부여하며 100인 이상 기업과 AI·DX 관련 산업체는 건당 1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단, 유지의 경우, 개인 협력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담당 부서의 승인 받은 실적만 인정한다.

2) 애로기술지도(자문)(개인점수)

- ① 애로기술지도(자문)은 설계기술, 생산기반기술, 공정관리, 설비관리, 자동화, 정보화, 제품품질 개선, 디자인, 기술이전, 시제품제작 등 신제품개발, 경영지원, 창업 등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부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한다.
- ② 건당 1점을 부여하며 경기도 소재 기업 연계, AI·DX 관련 애로기술지도 실적은 건당 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3) 지산학협업센터 관련 활동(개인점수)

- ① 지산학협업센터 관련 활동은 산업체 재직자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관련 부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한다.
- ② 유료 재직자 교육: 건당 12시간 기준 3점
- ③ 무료 재직자 교육: 건당 4시간 기준 1점
- ④ 경기도 소재 기업 연계, AI·DX 관련 재직자 교육 실적은 건당 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 ⑤ 지산학협업센터 운영 수입금이 발생한 경우, 50만원 당 1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 ⑥ 수주액 인정 비율(교내·외 참여 인원 모두 포함, 소수점 이하 절사)
- 단독: 100%
 - 2인: 책임 70%, 공동 30%
 - 3인: 책임 60%, 공동 20%
 - 4인 이상: 책임 50%, 공동 10%

4) 공용장비 관련 활동(개인점수)

- ① 공용장비 관련 활동은 공용장비 활용 콘텐츠 제작, 공동연구(기술개발 등), 공용장비 및 공동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관련 부처 증빙서류 제출 시 건당 1점을 부여한다.
- ② 산업체 연계 공용장비 활용 실적(사용료 10만원 이상/ 마일리지 10만점 이상)이 있을 경우 건당 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5) 가족회사 유료 멤버십 유치

- ① 가족회사 유료 멤버십 산업체를 유치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관련 부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한다.
- ② 건당 효(孝): 3점, 충(忠): 2점, 예(禮): 1점으로 산출한다.
- ③ 가족회사 유치 인정 비율
- 단독: 100%, 2인: 50%, 3인: 30%, 4인 이상: 15%

3. 현장실습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학과점수)(상한 없음)

- 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기간별 가산점과 참여 학생 수 기준으로 차등 점수화한다.
- ② 학생 수 기준 1명당 0.5점을 부여한다.
- ③ 국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은 참여 학생 1인당 1점의 추가 가산점을 부여한다.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순회지도(개인점수)(상한 6 점)

- ① 현장실습지도는 기간별 현장실습 가중치와 지도학생 인원에 따라 점수를 산출하며, 이에 대한 관련부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한다.
- ② 현장실습 지도학생 1인당 0.5점으로 부여한다.
- ③ 현장실습 지도는 현장실습 기간에 따라 4주 이상 8주 미만을 최소 기준으로 인정하며, 8주 이상 12주 미만은 0.5점, 12주 이상은 1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단, 현장실습 의무학과의 경우 해당 학과의 인증 기준에 따른다.

3) 기업/ 해외 인턴십(개인점수)(상한 6점)

- ① 기업/ 해외 인턴십은 지도학생 인원에 따라 점수를 산출하며, 이에 대한 관련 부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한다.
- ② 지도학생 1인당 0.5점으로 부여한다.

4. 산학교육활동**1) 취업활동 지원(개인점수)**

- ① 취업활동 지원은 성과 포럼 참여 및 지도를 의미하며 잡 페어 참가, 작품 전시, 공연 전시, 취업박람회, 산학 포럼, 경진대회(캡스톤디자인, 창업동아리, 전공동아리 지도교수) 참여 및 지도 시 건당 1점을 부여한다.
- ② 주관부서인 취·창업일자리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지도 교육 참석(상한 2점)에 대해 3시간당 1점을 부여한다.

2) 현장 연계 방식 운영(개인점수)

- ①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을 의미하며 책임교수는 2점, 공동참여자는 1점을 부여한다.
- ② AI·DX 적용 주문식 교육과정 책임교수는 1점, 공동참여자는 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3) 취업지원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지도(개인점수)(상한 3점)

- ① 정부재정지원사업으로 취·창업일자리센터, KM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Job-ARA센터에서 개설한 취업 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의 학생참여 지도 시 부여하며, 이에 대한 관련 부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한다.
- ② 학생참여 지도의 실적은 참여 학생 수 기준으로 차등 점수화한다.
- ③ 5~10명 미만(0.5점), 10~15명 미만(1점), 15~20명 미만(1.5점), 20~25명 미만(2점), 25~30명 미만(2.5점), 30명 이상(3점)을 부여한다.

4) 글로벌 교육활동(학과점수)(상한 2점)

- ① 글로벌 교육활동은 글로벌적응교육(사전역량교육, 토익캠프, 선배멘토링 등), 기업맞춤교

육(기업맞춤교육, 해외산업체 특강, 분야별 직무역량 사전교육 등), 글로벌 취업연계교육(해외현장실습, 해외인턴십, 해외취업설명회 등), 글로벌교육교류(해외 대학간 교원포럼, 해외 대학간 학점 연계, 해외 산업체 재직자 교육, 해외 전문기술 협업 등)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관련부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한다.

- ② 글로벌 교육활동 실적은 참여 학생 수(재직자 수) 기준으로 차등 점수화한다.
- ③ 5~10명 미만(0.5점), 10~15명 미만(1점), 15~20명 미만(1.5점), 20명 이상(2점)을 부여한다.

5. 창업활동지원

1) 창업동아리(개인점수)(최대 2 팀)

- ① 창업동아리는 1팀을 지도할 경우 2점, 2팀을 지도할 경우 4점을 부여한다. 단, 단순 개설은 불인정하며 창업동아리 활동(간담회, 경진대회, 현장견학, 특강, 창업캠프, 창업인큐베이터 등)에 지도학생이 3회 이상 참여하면 인정한다.(4회 0.5점, 5회 이상 1점 가산점 부여)
- ② 주관부서인 취·창업일자리센터에서 발급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건(팀)당 점수화한다.

2) 창업활동지원(개인점수)

- ① 중기청 창업아카데미, 창업모델 개발과 운영, 창업 아이템 개발, 교외 창업경진대회 참여 지도 시 건당 1점을 부여하며, 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시 건당 2점을 부여한다.
- ② 주관부서인 취·창업일자리센터에서 진행하는 창업지도 교육 참석(상한 2점)에 대해 3시간당 1점을 부여한다.

3) 창업지원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지도(개인점수)(상한 2점)

- ① 정부재정지원 사업으로 취·창업일자리센에서 개설한 창업 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의 학생 참여 지도 시 부여하며, 이에 대한 관련부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한다.
- ② 학생참여 지도는 실적은 참여 학생 수 기준으로 차등 점수화한다.
- ③ 5~10명 미만(0.5점), 10~15명 미만(1점), 15~20명 미만(1.5점), 20명 이상(2점)을 부여한다.

4) 학생창업(개인점수)

- ① 학생 창업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학생만 인정하며, 취·창업일자리센터에 사업자등록 서류가 제출(창업지도교수 확인)된 경우 1건당 4점을 부여한다.

6. 산학연구

1) 외부 프로젝트

- ① 외부 프로젝트 수탁연구는 산학협력단을 경유해 계약이 이루어진 연구를 말한다.
- ② 외부 프로젝트 수탁연구는 계약서의 계약일 기준으로 당해 연도만 인정한다.
- ③ 수탁금액 50만원 당 0.5점을 부여한다.
- ④ 교외 연구비 수주액 인정 비율(연구원 수: 교내·외 참여연구원 모두 포함)
- 단독: 100%

- 2인: 책임연구원 70%, 연구원 30%
- 3인: 책임연구원 60%, 연구원 20%
- 4인 이상: 책임연구원 50%, 연구원 10%

2) 정부재정지원 사업 참여 및 기타 산학협력 사업계획서(개인점수)

- ① 정부재정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참여는 건당(신규 사업계획서 5점, 연차 사업계획서 2점, 연차 결과 보고서 2점, 수정 사업계획서 1점), 기타 산학협력 사업계획서 작성 참여는 건당 1점(단, 사업 규모 1억 이상 건당 1점 가산점 부여)
- ② 수주 시 사업 참여에 따른 가산점: 정부 재정지원사업 건당 2점, 기타 산학협력 사업 참여 건당 1점

3) 대학발전 프로젝트 참여(개인점수)

- ① 대학발전 프로젝트 참여는 책임 2점, 공동참여자 1점을 부여한다.

7. 기술연구

1) 기업 부설연구소 유치(개인점수)

- ① 기업 부설연구소 유치 시 5 점

2) 지식재산권 등록(개인점수)

- ① 산업재산권 등록
 - 특허 : 건당 국내 특허 등록 5 점, 출원 2 점 / 국제특허 등록 10 점, 출원 5 점
 - 실용신안 : 건당 국내 5 점 / 국제 10 점
 - 디자인 등록 : 건당 3 점
 - 상표 등록 : 건당 2 점
- ② 저작권 등록
 - 저작권이나 문화예술분야의 창작: 건당 5 점
- ③ 신지식 재산권 등록 : 건당 5 점
- ④ 공동 지식재산권 등록 시(지도학생 포함 가능) 수주 인정 비율
 - 공동: $1/n(\text{참여자 수}) \times 100\%$

3) 신기술(NET), 신제품(NEP)(개인점수)

- ① 인증 : 건당 5 점(단, 기업 부설 연구소와의 협업 인증일 경우 2 점 가산점 부여)

8. 기술사업화

1) 기술이전 / 중개 / 평가(개인점수): 건당 1 점

2) 기술이전 후 사업화 성공(개인점수)

- ① 현물출자금액 100 만원당 2 점

- ② 정부로부터 공인된 기술평가 기관으로부터 교원이 발명한 기술(특허)에 대하여 기술 가치를 평가받아 법인에 현물 출자된 금액에 한하여 인정

3) 학교기업 설립 및 유지(개인점수)

- ① 설립: 대표자 5 점, 책임교수 3 점
- ② 유지: 매출액 500 만원당 2 점(대표자, 책임교수 동일) 또는 본교 재학생 고용 창출 시 1 인당 5 점

4) 교원 창업 및 유지(개인점수)

- ① 교원 창업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교원만 인정하며 건당 5 점을 부여한다.
- ② 유지는 창업 후 본교 외부 수탁연구 실적이 있을 경우, 건당 5 점 또는 본교 재학생 고용 창출 시 1 인당 5 점을 부여한다.

[별표 4] 연구업적 평가영역별 배점 기준 종합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 세부 항목	점 수	상한점	비 고
연구업적 (6점)	1. 학술논문	○ 국제 전문학술지: SCI급/학술지 (SCI, SCIE, SSCI, A&HCI)에 게재된 논문	6	상한없음	KRI에 입력 및 승인된 실적만 인정
		○ 국내 전문학술지: KCI급(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 등재,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국내에서 발행하는 국제전문, 국제일반 학술지는 제외), SCOPUS	5		
		○ 국내 일반학술지: KCI급 학술지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기타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1		
		○ 대학 논문 - 심사 논문 1점 - 프로젝트 보고서 0.5점	0.5-1	상한 1	
	2. 학술저서	○ 국제 전문 저서	2	상한없음	
		○ 국내 전문 저서	1		
	3. 학술대회	○ 국제 학술대회 - 구두 발표 2점/ 포스터발표 1점	1-2	상한없음	
		○ 전국 규모 국내 학술대회 - 구두 발표 1점/ 포스터발표 0.5점	0.5-1		
	4. 창작발표 등	○ 초대전, 개인, 단체전, 연출, 감독: - 공인 국제전 개인(2점) / 단체(1점) - 공인 국내전 개인(1점) / 단체(0.5점)	1-2 0.5-1	상한없음	
		○ 공모전 - 공인 국제 공모전(2점) - 전국 규모 공모전(0.5점)	2 0.5		

* 연구 영역 6 점 초과 달성 시, 산학협력영역, 입시홍보영역 점수로 대체가능

■ 연구업적 영역의 세부사항

1. 학술논문(상한없음)

1) 국제 전문논문(개인점수)

- ① 국제 전문학술지(6 점/건): SCI 급 학술지(SCI, SCIE, SSCI, A&HCI)

2) 국내 전문논문(개인점수)

- ① 국내 전문학술지(5 점/건): KCI 급(한국연구재단 우수 등재, 등재, 등재 후보) 학술지(국내에서 발행하는 국제 전문, 국제 일반 학술지는 제외), SCOPUS

- ② 국내 일반학술지(1 점/건): KCI 급 학술지를 제외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국내 기타 학술지

* KRI에 입력 및 승인된 대학정보공시 연계 실적만 인정함

* 논문연구실적 인정 비율

- 단독: 100% · 2인: 70%, · 3인: 50% · 4인 이상: 30%

- 단, 논문의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 0.5점을 가산한다.

3) 대학논문(개인점수)

- ① 1 점/건, 0.5 점/건

- 심사 논문: 1 점

- 프로젝트 보고서: 0.5 점

* 논문연구실적 인정 비율

- 단독: 100% · 2인: 70%, · 3인: 50% · 4인 이상: 30%

2. 학술저서(상한없음)

1) 국제 전문 저서(개인점수)

- ① 2 점/건

2) 국내 전문 저서(개인점수)

- ① 1 점/건

* 저서연구실적 인정 비율

- 단독: 1건 / 공동: 1/n건(n=참여저자수)

- ISBN으로 등록된 저서만 인정

- 당해 연도에 신규 출판된 출판물만 인정(서평, 편서, 개정증보판 제외함. 상·하권 등 시리즈물은 각각 인정)

3. 학술대회(상한없음)

1) 국제 학술대회(개인점수)

- ① 구두 발표 2 점/건, 포스터발표 1 점/건

2) 전국 규모 국내 학술대회(개인점수)

- ① 구두 발표 1 점/건, 포스터발표 0.5 점/건

4. 창작발표 등(학과의 직무와 관련될 경우만 인정)(상한없음)

1) 초대전, 개인전, 단체전, 연출, 감독(개인점수)

- ① 공인 국제전(개인전: 2 점, 단체전: 1 점)
(개인전, 연출, 제작자, 주연: 2 점, 단체전, 조연: 1 점)
(초대전, 공연 작품 제작 감독 등 음반 및 작곡집 출간, 공연 기획)
- ② 공인 국내전(개인전: 1 점, 단체전: 0.5 점)
(개인전, 연출, 제작자, 주연: 1 점, 단체전, 조연: 0.5 점)
(초대전, 공연 작품 제작 감독 등 음반 및 작곡집 출간, 공연 기획)

2) 공모전(개인점수)

- ① 공인 국제 공모전(특선, 입선 등: 2 점)
- ② 전국 규모 공모전(0.5 점)

[별표 5] 입시홍보 업적평가 영역별 배점 기준 종합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 세부 항목	점 수	상한점	비 고
입시홍보 업적 (30점)	1. 입시홍보 (상한 6점)	○[부처 주관] 입시홍보 활동	1	6	
		○[학과 주관] 입시홍보 활동	0.5		
		○입시설명회 유치 활동(본교/고교)	-	6	구간별 차등부여
		○예비경민인 신청서 접수 활동	0.2	6	
		○학과 SNS 홍보 활동	-	3	
		○학과 주관 고등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지도 활동	1	3	
		○대학·학과 홍보를 위한 언론 활동	-	3	세부사항 참조
	2. 등록유도 및 정원모집 활동 (상한 6점)	○예비경민인 대상 오픈캠퍼스 활동	학생수*0.2	6	
		○전문기술석사, 학사학위, 산업체모집 활동	3/2/1	3	
		○정시모집 및 추가(자율) 모집 활동	0.2	1	
	3. 등록관리 (상한 6점)	○예비경민인 등록	학생수*0.2	6	
		○학과 모집 정원 내 등록률	2	2	
		○수시 1차 모집 정원 내 대비 등록률	2	2	
		○수시 2차 모집 정원 내 대비 등록률	2	2	
		○정시모집 정원 내 대비 등록률	2	2	
	4. 모집기여도 (상한 6점)	○학과의 모집기여도	-	6	세부사항 참조
	5. 학과 입시경쟁력 지수 (상한 6점)	○수시1차 모집 인원 수 대비 등록자 순위 비율	-	4	
		○수시2차 모집 인원 수 대비 등록자 순위 비율	-	2	

* 입시홍보 영역 30점 초과 달성 시, 산학협력영역, 연구영역 점수로 대체가능

■ 입시홍보 영역의 세부 사항

1. 입시홍보

1) 부처 주관 입시홍보 활동(개인점수)

- ① 대학(학과) 홍보를 위하여 부처 주관 입시박람회, 고교방문 입시설명회, 고교 연계 프로그램 참여 및 운영, 지도 활동 등을 참여한 경우 건당 1점을 부여한다.

2) 학과 주관 입시홍보 활동(개인점수)

- ① 개인 역량으로 대학(학과) 홍보를 위한 고교, 학원, 기타 기관 등 입시설명회 및 홍보 활동 등을 의미하며 방문 건당 0.5점을 부여한다.

3) 입시설명회 유치 및 개최(본교/고교)

- ① 개인 역량으로 학교(과) 홍보를 위하여 본교 또는 고교/학원 등에 학생 대상 입시설명회를 유치한 경우를 의미한다
- ② 참여학생 출석부(사인 필수) 제출 시 인정되며, 학생 참여 인원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고교/학원 등의 요청으로 같은 학과 및 타 학과 교수가 동행할 경우 구간별 점수 부여)
- ③ 학생 참여 인원수에 따라 1~10명은 1점(동행교수 0.5점), 11~20명은 2점(동행교수 1점), 21~50명은 4점(동행교수 2점), 51명 이상은 6점(동행교수 4점)을 부여한다.

4) 예비 경민인 신청서 접수(개인점수)

- ① 교수 추천으로 예비경민인 신청서를 접수한 후 KM오픈캠퍼스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며 학생수 당 0.2점을 부여한다.

5) 학과 주관 SNS 홍보활동(학과점수)

- ① 학과 주관 SNS 홍보활동은 당해연도 3월부터 차기년도 2월까지 입학홍보처에서 승인한 학과 SNS 홍보 계정(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에 학과 홍보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월 평균 홍보게시물 업로드 건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 ② 2건 이상은 0.3점, 4건 이상은 0.6점, 6건 이상은 1.8점, 8건 이상은 2.4점, 10건 이상은 3점을 부여한다. 단, 유튜브 영상(롱폼)의 경우 1건당 2.5배로 계산한다.

6) 학과 주관 고등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지도 활동(개인점수)

- ① 학과 홍보를 위하여 전공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활동 및 교내경연대회 운영 활동 등을 의미하며 진행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증빙자료 제출 시 활동 건수당 1점을 부여한다.

7) 대학·학과 홍보를 위한 언론 활동(개인점수)

- ① 대학·학과 홍보를 위한 전공 직무 영역 언론 활동 실적을 의미하며 전국 방송(KBS, MBC, SBS, JTBC) 출연 건당(대학명 포함) 1점, 지역방송의 경우 건당(대학명 포함) 0.5점,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등 및 한국대학신문 등 대학명을 포함한 기고는 건당 0.5점을 부여한다.

2. 등록유도 및 정원모집 활동

1) 예비경민인 대상 오픈캠퍼스

- ① 예비경민인 대상 학과 KM오픈캠퍼스 운영을 의미하며 학생 수당 0.2점을 부여한다.

2) 전문기술석사, 학사학위, 산업체 모집 활동(학과점수)

- ① 전문기술석사 모집 활동 점수로 100% 3점, 90%~100% 미만 2.5점, 80%~ 90% 미만 2.0점, 70%~80% 미만 1.5점, 60%~70% 미만 1.0점을 부여한다.
- ② 전공심화 모집 활동 점수로 100% 2점, 90%~100% 미만 1.6점, 80%~ 90% 미만 1.2점, 70%~80% 미만 0.9점, 60%~70% 미만 0.6점을 부여한다.
- ③ 산업체 모집 활동 점수로 100% 1점, 90%~100% 미만 0.8점, 80%~ 90% 미만 0.6점, 70%~80% 미만 0.4점, 60%~70% 미만 0.2점을 부여한다.
- ④ 단, 모집 정원 대비 등록률에 따른 점수로 입학홍보처와 교무학생처 모집 요강 및 규정 따른 별도 정규반 편성 운영만 인정한다.

3) 정시모집 및 추가(자율) 모집 활동(개인점수)

- ① 정시모집 및 추가(자율) 모집에 대학 신입생 유치 실적(본인 소속 학과 포함)은 입학 지원서 작성 후 학생 본 등록을 한 인원으로 학생 수당 0.2점을 부여한다.
- ② 신입생 유치 실적 기준은 직전년도 04월 01일 자 기준으로 한다.

3. 등록관리

1) 예비경민인 등록

- ① 추천한 지원자가 예비경민인 프로그램 이수 후 최종 등록한 경우를 의미하며 학생 수당 0.2점을 부여한다.

2) 학과 모집 정원 내 등록률(학과점수)

- ① 직전년도 학과 신입생 모집 정원 내 등록률에 따른 실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은 제외하여 산정한다.
- ② 학과 모집 정원 내 등록률은 [(정원 내 등록 인원/ 정원 내 모집정원)×100]으로 산출하며, 100% 2점, 95% 이상 ~ 100% 미만 1.6점, 90% 이상 ~ 95% 미만 1.2점, 85% 이상 ~ 90% 미만 0.8점, 80% 이상 ~ 85% 미만 0.4점을 부여한다

3) 수시 1차 모집 정원 내 대비 등록률(학과점수)

- ① 직전년도 수시 1차 모집 정원 내 등록률에 따른 실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은 제외하여 산정한다.
- ② 수시 1차 모집 정원 내 대비 등록률은 [(정원 내 등록 인원/ 정원 내 모집정원)×100]으로 산출하며, 100% 2점, 95% 이상 ~ 100% 미만 1.6점, 90% 이상 ~ 95% 미만 1.2점, 85% 이상 ~ 90% 미만 0.8점, 80% 이상 ~ 85% 미만 0.4점을 부여한다.

4) 수시 2차 모집 정원 내 대비 등록률(학과점수)

- ① 직전년도 수시 2차 모집 정원 내 등록률에 따른 실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은 제외하여 산정한다.

- ② 수시 2차 모집 정원 내 대비 등록률은 [(정원 내 등록 인원/ 정원 내 모집 정원)×100]으로 산출하며, 100% 2점, 95% 이상 ~ 100% 미만 1.6점, 90% 이상 ~ 95% 미만 1.2점, 85% 이상 ~ 90% 미만 0.8점, 80% 이상 ~ 85% 미만 0.4점을 부여한다.

5) 정시모집 정원 내 대비 등록률(학과점수)

- ① 직전년도 정시모집 정원 내 등록률에 따른 실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은 제외하여 산정한다.
- ② 정시모집 정원 내 대비 등록률은 [(정원 내 등록 인원/ 정원 내 모집정원)×100]으로 산출하며, 100% 2점, 95% 이상 ~ 100% 미만 1.6점, 90% 이상 ~ 95% 미만 1.2점, 85% 이상 ~ 90% 미만 0.8점, 80% 이상 ~ 85% 미만 0.4점을 부여한다.

4. 모집기여도

1) 학과의 모집기여도

- ① 학과의 모집기여도는 직전년도 대학 전체 모집 인원 대비 학과 전임교원 1인당 모집 기여 비중에 따라 산출한다.
- ② (학과별 모집 기여율 / 학과 전임교원 수)에 따른 구간별 점수로 부여한다. 상위 10% 이내 6점, 상위 10% 초과 ~ 25% 이내 5점, 상위 25% 초과 ~ 50% 이내 4점, 하위 50% 이내 ~ 25% 초과 3점, 하위 25% 이내 ~ 10% 초과 2점, 하위 10% 이내 1점으로 부여한다.
 - 학과별 모집 기여율: 정원 내·외 학과별 등록 인원 / 대학 전체 등록 인원
 - 정원내·외 학과별 등록인원은 신입생충원율에 반영되는 전문기술석사 모집인원을 포함하여 산출
 - 학과 전임교원 수: 해당 학기 기준 계약제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5. 학과 입시 경쟁력

1) 수시1차 학과 입시경쟁력 지수(학과점수)

- ① 수시1차 학과 입시경쟁력 지수는 (수시1차 모집인원/최종합격자 순위)에 따라 구간별 점수로 부여한다. 상위 20% 이내 4점, 상위 20% 초과 ~ 50% 이내 3점, 하위 50% 미만 ~ 하위 20% 초과 2점, 하위 20% 이내 1점으로 산출한다.
 - 전형이나 종목이 2개 이상인 경우 인원수 비율로 계산하여 합산

2) 수시2차 학과 입시경쟁력 지수(학과점수)

- ① 수시2차 학과 입시경쟁력 지수는 (수시2차 모집인원/최종합격자 순위)에 따른 구간별 점수로 부여한다. 상위 20% 이내 2점, 상위 20% 초과 ~ 50% 이내 1.5점, 하위 50% 미만 ~ 하위 20% 초과 1점, 하위 20% 이내 0.5점으로 산출한다.
 - 전형이나 종목이 2개 이상인 경우 인원수 비율로 계산하여 합산

[별표 6] 공과업적 평가영역별 배점 기준 종합표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 세부 항목	점수	상한점	비 고
공과 업적	1. 가산점	○ 상훈(인사규정) - 상훈 실적에 따라 A-F까지 6단계 표에 의거 평가	1-5	상한 10	
		○ 발전 기금 - 장학금 / 기자재 / 발전 기금 유치 10만원 당 0.2점	0.2	상한없음	
		○ 장학금기탁 - 10만원 당 0.2점	0.2	상한없음	
		○ 인증평가 활동 - 대학 인증평가 참여 활동 - 학과 인증평가 참여 활동	1 0.5		
		○ 보직 - 총장 - 부총장 - 교무위원(교무학생처장, 산학기획처 장, 입학홍보처장), 학장, 단장 - 실장, 원장, 도서관장 - 부단장, 부처장 - 센터장, 사업 책임교수 - 학과장 - 미술관장, 부센터장, KM 미디어 홍보국 주간교수 - 연구교수, 인증평가 책임교수, 부학과장	100 80 50 30 20 15 10 8 5	중복 시 상위 보직만 인정	
	2. 감 점	○ 징계 - 징계 기준에 따라 A-H까지 8단계 표에 의거 평가	-1.5 -10		
		○ 학사 관리 미 준수, 범정의무교육, 본교 행사 미 참여 - 학사 관리 미 준수 사항 건당 -0.5점 - 범정의무교육 수료증 미제출 시 건당 -0.5점 - 본교 행사 미 참여 시 건당 -0.5점 - 학생상담틀 저조시 학기당 -0.5점	-0.5 -0.5 -0.5 -0.5		

■ 공과업적 영역의 세부사항

1. 가산점

1) 상훈(개인점수)(상한 10 점)

① 상훈실적에 따라 A~F 까지 6 단계 표에 의거 평가

등급	포상명	점수
A	훈포장	5점
B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4점
C	장관상, 이사장, 총장상	3점
D	광역 단체장상, 학술상(국가 및 국제 단체)	2점
E	공공기관장 표창	1점
F	기타 표창	0.5점

※ 평가 기간 내 상훈 실적이 여러 개일 경우 각 수상 실적의 배점을 합산하여 평정 점수로 반영한다. 단, 동일한 실적에 근거한 상훈이 여러 개일 경우 상훈의 격이 가장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 기타 표창(1개 실적 제출) 인정은 교수업적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교내 장기근속 표창은 상훈 실적에서 제외한다.

2) 장학금 / 기자재 / 발전 기금 유치(개인점수)(상한없음)

- 10 만원 당 0.2 점

3) 장학금 / 기자재 / 발전 기금 기탁(개인점수)(상한없음)

- 10 만원 당 0.2 점

4) 인증평가 활동(개인점수)

① 대학 인증평가 활동에 참여한 실적 1 점

② 학과 인증평가 활동에 참여한 실적 0.5 점

- (간호인증평가, 유아교육 교원양성평가): 교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교육 평가·인증과 관련된 평가 참여, 학과의 인증 및 평가와 관련된 교육 개선 활동 참여를 의미함

-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 인증): 교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교육 평가·인증과 관련된 평가 참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문항 개발 및 출제 참여 등 학과의 인증 및 평가와 관련된 교육 개선 활동 참여를 의미함

5) 보직(개인점수)

① 총장(100 점), 부총장(80 점), 교무위원(교무학생처장, 산학기획처장, 입학홍보처장), 학장, 단장(50 점), 실장, 원장, 도서관장(30 점), 부단장, 부처장(20 점), 센터장, 사업 책임교수(15 점), 학과장(10 점), 미술관장, 부센터장, KM 미디어 홍보국 주간교수(8 점), 연구교수, 인증평가 책임교수, 부학과장(5 점)

- ② 보직이 중복될 경우 상위 보직 점수만 인정하며, 교무위원급 이상은 교수업적평가 우수교수 포상에서 제외한다.
- ③ 교무위원, 학장, 단장 이상은 보직 종료 후 1년간 보직 점수의 50%를 인정한다.

2. 감점

1) 징계(인사규정)

- ① A~H 까지 8 단계 표에 의거 평가

등 급	내 용	비고
A	정직 3개월 : - 10점	
B	정직 2개월 : - 9점	
C	정직 1개월 : - 8점	
D	감봉 3개월 : - 6점	
E	감봉 2개월 : - 5점	
F	감봉 1개월 : - 4점	
G	견 책 : - 3점	
H	경고 및 주의 : -1.5점	

2) 학사관리 미 준수, 범정의무교육, 본교 행사 미 참여(개인점수)

- ① 수업 및 성적 등 학사관리 미 준수 사항 -0.5 점
- ② 범정의무교육 수료증 미제출 시 건당 -0.5 점
- ③ 경민학원 동/ 하계 연수 및 전체 교수회의, 교수 코이노니아 등 미 참여 시 건당 -0.5점
- ④ 학생상담률 80% 미만 시 학기당 -0.5점

[별지 제1호 서식]

각종시험 및 대회지도 확인서	
확인내용	
지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지도방법	1. 단체지도 2. 개인지도 3. 기타()
지도주기	월 ()회, 주 ()회
지도내용	
지도결과	
<p>상기와 같이 신청하니 이에 대해 확인을 바랍니다.</p> <p>첨부 1. 학생명부.....1부 2. 관련 증빙서류.....1부</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_____(인)</p> <p style="text-align: center;">확 인 : _____(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교수업적평가위원회 위원장 귀하</p>	

※ 확인 내용 란에 각종시험 및 대회정보 내용을 기록한다.

